

## ●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 제2026-25호

2026년 3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4월 03일
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

### 개선권고 재결공고[중앙해심 제2026-002호(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)]

사 건 명 : 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

피요청자 : 폴\*\*\*\*\* \*\*\*\*(\*\*\*\* \*\*)

서\*\*\*\*\* \*\* \*\* \*, \*\*

귀사가 사실상 소유하며 운항하던 스텔라데이지가 2017. 3. 31. 13:24경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동방으로 약 1,550해리 떨어진 남대서양 해상에서 침몰하여 승선한 선원 22명이 실종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

이 침몰사건은 스텔라데이지가 개조 이후 취약해진 횡강도, 장기간 누적된 피로 손상 및 귀사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선체 구조 강도가 약화된 상태에서 철광석을 만재하고 항해하던 중, 너울성 파랑에 의한 비대칭 횡압력 등에 의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2번 및 3번 좌현 선박평형수탱크 선저만 곡부의 외판이 찢겨나가 대량 해수 유입이 발생한 후 인접 탱크까지 손상 및 침수가 확대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

따라서 이러한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귀사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첫째, 선박검사 후에도 관련 법령 및 선급규칙의 기준에 부합하여 선박 상태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기 정비·보수, 선체 주요 구조물 결함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방안 시행 등 선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.

둘째, 유사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현행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5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선박 감항성 유지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선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,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, 소속 선원과 종사자의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가 반영되도록 사업장·선박 안전관리체제를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.